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01 | November 2022

삼성KPMG 세무본부 TKC

Contents

Page

소득법인세 분야

2

- [판례]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 [예규] 소재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 [예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 시 소득의 의미

재산소비세 분야

4

- [심판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발행법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임대 및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분양전환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 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예규]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 [예규]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 [예규]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의 판정시기 등
- [예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가 능 여부
- [예규] 정관상 잉여금과 잔여자산을 분배할 수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출자로 설립한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 여부

지방세 분야

9

- [심판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서 규정한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물의 분할” 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의 경우도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취득한 쟁점건물에서 배우자 1인의 명의로만 쟁점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관세 분야

11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법인세 분야

[판례]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사안] 원고는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의 7 제2항, 제3항 단서가 정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 원고의 수탁은행은 원고에게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판단] 국외투자기구는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구성원과 독립하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등에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고,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외투자기구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2항 및 제3항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이 사건 규정”)이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각 규정이 국외투자기구에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국외투자기구에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TKC 코멘트]

- 위 대법원 판결은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보고 원고가 제기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누52944 판결).

[예규]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 10. 20.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예규]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 10. 27.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으로 보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예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 시 소득의 의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 11. 1.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재산소비세 분야

[심판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2서7044, 2022. 10. 31.

[사안] 청구법인은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고객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에 위 할인비용(“쟁점할인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쟁점할인비용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임이 명확한 반면, 쟁점할인비용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할인비용은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와는 별개의 채무로 볼 여지도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등이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TKC 코멘트]

- 조세심판원은 현장할인뿐만 아니라 청구할인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조심 2021중2746, 2021. 9. 16.), 위 두 가지 유형의 할인 중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장’할인에 한정된다는 입장임(조심 2020서 1311, 2021. 3. 17.). 결국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와 교육세 과세표준(수입금액) 제외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법상 매출에누리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2020. 11. 3.). 따라서 ‘청구’할인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 간에 견해대립이 존재함(조세심판원=부정(교육세 과세대상 O), 기획재정부=공정(교육세 과세대상 X)).

[심판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발행법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임대 및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분양전환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 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1서3560, 2022. 10. 20.

[사안] 청구인 甲과 乙은 A사(“쟁점법인”) 발행주식의 72% 상당을 보유한 丙의 아들들로, 2015. 8. 20. 조부 丁과 B사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쟁점①주식”)을 각각 양수하였음. 이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청구인들은 주주 균등배정에 따라 주식(“쟁점②주식”,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각자 아버지 丙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증자액을 납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함. 쟁점법인은 임대아파트를 신축·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0. 1. 13. 입주예정자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확정분양가 조건 분양전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임대주택 준공일(2012. 6. 28.) 이후 2017. 7. 18.~2017. 7. 21. 기간 동안 분양전환계약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전 세대가분양전환을 하였음.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2017. 7. 18. 분양전환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미성년자 당시 취득한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이는 상증세법 제42조의 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양전환계약일인 2017. 7. 18.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분을 각 결정·고지함.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후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내부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에게 당시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시기·전환조건 및 전환가액 등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기본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었으나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확정분양가 조건 분양전환합의서 작성세대수 등의 정보는 공표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은 이러한 내부정보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은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하나로, 개발사업의 시행·형질변경 및 기타 사업의 인·허가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거된 사유들과 유사한 정도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9서3105, 2020. 4. 6. 등)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이고, 쟁점법인은 2015년 8월경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여 쟁점①주식의 양도 등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이 2017년 평가기준일 현재 급증하여,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가치를 증가시킬 것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및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그 가치증가는 상증세법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임. 또한,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향후 분양전환 시 손해 또는 이익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임차인들과 최종적으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분양전환세대 등이 확정되어 분양전환에 따른 손익을 확정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일(2017. 7. 18.)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음.

[TKC 코멘트]

- “개발사업의 시행·형질변경 및 기타 사업의 인·허가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주요 심판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긍정 사례)

- 석유화학사업은 중국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으로서 장기간의 사업진행 과정을 거쳐 중국공장을 완공한 경우(조심2015서0267)
-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면적 확대고시한 경우(조심2013구3675)
-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98% 정도가 분양된 경우(조심2019서3105)
- 쟁점지분을 취득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었고,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은 공유물 분할 당시의 매매사례가액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조심2017서2913)
- 당초 전, 답, 임야로 취득한 사업부지의 대지 전환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예상되었고, 사전에 구체적인 분양수익금액을 추산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실제로도 높은 분양율을 기록한 경우(조심2015부4986)

(부정 사례)

-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률은 최초 분양계약 당시 11%, 사용승인일 현재 30%, 최초 분양계약일 이후 약 4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조심2020중1104)
- 이미 택지로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조심2019서0306)

[예규]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 10. 21.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회신일(2022. 10. 21.)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종래 국세청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기준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음(서일46014-10582, 2001. 12. 7., 재일46014-517, 1997. 3. 7.).

[예규]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2020-부동산-3030, 2022. 11. 3.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를 법무법인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TKC 코멘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예규는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는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보지 않은 것임.

[예규]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2022. 10.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8. 25. 대통령령 제3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연계대부업자”)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TKC 코멘트]

- 교육세법 제3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예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동과-1086, 2022. 9. 30.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부동산등 가액") 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예규]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의 판정시기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7, 2022. 9. 20.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예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가 능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315, 2022. 10. 19.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임. 한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3 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의 3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TKC 코멘트]

- 위 예규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관한 내용은 기존 예규와 동일함(서면-2019-법규재산-4667, 2022. 1. 24.).

[예규] 정관상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출자로 설립한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279, 2022. 11.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임.

지방세 분야

[심판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서 규정한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물의 분할” 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의 경우도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1지3377, 2022. 9. 29.

[사안]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101호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자 지분 1990.61분의 1690.85를 청구법인에게 2021. 4. 27. 공유물 분할(“쟁점공유물분할①”)을 원인으로 2021.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101호, 201호, 401호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자 지분 1990.61분의 299.76을 청구인에게 2021. 4. 27. 공유물 분할(“쟁점공유물분할②”), 쟁점공유물분할①과 합하여 “쟁점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21.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청구인 및 청구법인(“청구인들”)은 쟁점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쟁점시행령규정”)에 따라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공유물분할이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 쟁점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종전 소유하던 지분 면적을 제외하고 추가 취득한 지분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행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쟁점시행령규정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세율의 특례 규정으로서, 동 특례규정은 2010. 12. 27. 지방세법 개정 시 일반적인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과 실질이 유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지분정리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지방세법과 같이 취득세분(2%)은 비과세하고, 등록세분(0.3%)은 저율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쟁점시행령규정은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 없던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체계 하에서 통합 취득세를 과세할 때, 구 등록세와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례규정(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 12. 29. 신설된 규정인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쟁점시행령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심판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취득한 쟁점건물에서 배우자 1인의 명의로만 쟁점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1지2672, 2022. 10. 4.

[사안] 청구인은 토지(“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에 건축물(“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배우자와 각 2분의 1씩 공유로 취득한 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지특법 제20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쟁점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를 안내하여 청구인이 기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체 면적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당초대로 취득세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

[판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2]의 내용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원칙적으로는 시설 설치자가 시설을 설치할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나, 부부는 사실상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가 자유로운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적으로는 그 소유자와 신고자(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도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단법인의 회장으로 재임 중인 자로서 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8. 4. 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9. 3. 18.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그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한 것인 점, 쟁점복지시설의 ‘시설의 장’이 확인한 내용과 쟁점복지시설의 운영자금 이체내역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복지시설을 그의 배우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지특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TKC 코멘트]

- 행정안전부는, 위 심판례와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부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경우, 대표자 이외 그 배우자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지방세특례제도과-1005, 2021. 4. 30.).

관세 분야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22관0114, 2022. 10. 18.

[사안] 청구인은 2019. 1. 7. 쟁점수출자로부터 캔디류 제조를 위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① 16대(제조용 기계) 및 쟁점물품② 1대(포장용 기계)를 수입하면서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0~4%)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쟁점원산지증명서("비특혜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 10. 25. 청구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 12. 10. 처분청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기간이 초과되어 적법한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 12. 20.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 3. 17. 처분청에 가산세 부과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 3. 28. 이를 거부하며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6. 24.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쟁점1인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서 한-중 FTA 제3.17조와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수리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수입신고 시 세관장의 물품검사는 수입신고 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쟁점2인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유효하지 아니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통관과정에서 처분청의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책임이 처분청에 전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22관0006, 2022. 10. 14.

[사안] 청구법인은 2016. 10. 24.부터 2016. 12. 19.까지 DDD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KKK(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처분청은 FTA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등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그 원재료 구매를 위한 Purchase Order에 원산지가 BBB산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3. 24. 쟁점수출자에게 나머지 쟁점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2021. 5. 18.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위 회신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처분청은 2021. 6. 1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등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한 후,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21. 9. 13.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 및 고지(쟁점1)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 10. 2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신청(쟁점2)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쟁점3)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불승인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2. 7.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쟁점1인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쟁점수출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쟁점물품 등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쟁점원재료의 원산지가 DDD산이 아닐 가능성이 많음에도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입수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Lot Report 등은 그 작성일자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 등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쟁점물품 생산 당시에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미 FTA상 수출자 및 생산자 등 원산지조사 대상자가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를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1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쟁점2인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와 쟁점3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TKC 코멘트]

- 조심 2022관0114과 조심 2022관0006은 모두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처분에 대한 심판례임.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자인 수입자에게 있음. 따라서 FTA 원산지 조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수입자 측에서도 FTA를 점검한다면 아래의 Risk를 회피할 수 있음.
 - 사전 검토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Risk
 -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기한 내 관세당국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Risk
 -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 이전에 자체적으로 FTA를 점검하였음을 주장하여 가산세 부과 Risk
 - FTA 자체 점검을 통해 원산지 확인 의무에 귀책이 없음을 주장하여 수정수입계산서 미발급 Risk
- 한편,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공한 서류를 단순히 신뢰해서는 안 되고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을 수행하여 원산지 확인에 노력을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함.

삼성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